## 2025

25년 하반기 LX시험 지금 준비하세요

#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엠북 공공기관



- ↑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↑ 고득점용, 최근 법령 개정 반영
- ★ 공간정보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★ 2시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ISBN: 979-11-7393-014-0

도서명: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출판사: 엠북 홈페이지: https://www.mbook.kr/ 이메일: by4782@gmail.com 정가: 17,000원

발간일 : 2025-05-07

저자 : 김병연 교수

형식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###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(공간정보관리법, 이하 법)

#### [목차]

제1장 총칙(p7)

제2장 측량(p23)

제3장 지적(p120)

제4장 보칙(p206)

제5장 벌칙(p248~252)

# [약어]

- <u>공부</u>는 지적<u>공부</u>

-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- 부령은 국토교통부령 -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- 협회는 공간정보산업협회
-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
-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(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) <u>시</u>장, <u>군</u>수, 자치구의 구청장
- 지자체장은
- ·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

- · 시도지사, (대도시시장,) 소관청
- <u>경력등</u>은 기술자의 근무처, <u>경력</u>, 학력 및 자격 <u>등</u>
- 경력증은 측량기술경력증(근무처 및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경력등에 관한 증명서)

- <u>고시</u>는 고시 또는 정하여 <u>고시</u>
- <u>업자</u>는 측량<u>업자</u>(측량업 등록 한 자)
- <u>지적업자</u>는 <u>지적</u>측량<u>업자</u>(지적측량업 등록 한 자)
- <u>기술자</u>는 측량기술자
- <u>지적기술자</u>는 <u>지적</u>분야 측량<u>기술자</u>

- <u>수행자</u>는 지적측량<u>수행자</u>
- <u>소재</u>는 토지의 <u>소재</u>
- <u>소유자</u>는 (건축물, 구조물 소유자 이외는)

토지 <u>소유자</u>

- <u>관계인</u>은 이해<u>관계인</u> 또는 관계인
- <u>등록정정</u>은 <u>등록</u>사항의 <u>정정</u>
- <u>중앙위</u>는 <u>중앙</u>지적<u>위</u> - 지방위는 지방지적위
- 축변위는 축척변경위
- <u>국민취</u>는 <u>국</u>식<u>민</u>경<u>키</u>

##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 개정 내용

회색은 법령에 없는 내용

ᆿᆼᄱᆼᄀᇝᄌᆌᆈᆝ

붉은색은 공인중개사 빈출문제

ᇻᆫᇪᇰᇻᇬᅎᆀᆈᆁᄎ

하늘색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# 제1장 총칙

1~4조

#### 1. 목적

- 측량 기준/절차, 공부, 부동산종합공부

- 국토의 효율적 관리, 국민 소유권 보호 2. 정의

가. 측량

작성/관리

- 1) 공간정보 - 지상/지하/수상/수중 등 공간상
- 자연적/인공적 객체 위치정보 관련 공간적
-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
- 2) 측량
- 공간상 점들의 위치 측정, 특성을 조사해

도면/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 위치를 현지에 재현 - 측량용 사진 촬영, 지도 제작, 건설사업용 도면작성 3) 기본측량 - 모든 측량의 기초인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장관이 실시 4) 공공측량 가) 국가, 지자체, 다음 기관이 관계 법령상 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 - (과학기술분야 포함) 정부출연연구기관

- 공공기관
- **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**(이하 **지방공기업**)
- 지자체 출자기관
-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
- 도시가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
- 나) 이외의 자가 시행하고 장관이 고시하는
- 공공 이해/안전 관련 다음 측량
- <u>1제곱킬로미터</u> 이상 기준점측량, 지형측량,
- 10km 이상 기준점측량

평면측량

- 장관 발행 지도와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
- 1제곱킬로미터 이상 측량용 사진 촬영

- 지하시설물
- 인공위성 취득 영상에 좌표를 부여하는 2차원, 3차원 좌표측량

-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

- --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 있는 사설철도
- 부설, 간척, 매립사업에 수반

### 5) **지적측량**

-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,
- 좌표, 면적 정함
- 가) <mark>지</mark>적확정측량 - <mark>도</mark>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
- 정함 나) 지적재조사측량

-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함

- 6) 일반측량
- <mark>기</mark>본측량, <mark>공</mark>공측량, <mark>지</mark>적측량 외의 측량
- 7) 측량기준점
-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
- 등으로 표시해 측량 기준으로 사용
- 8) 측량성과
- 측량을 통해 얻은 최종 결과

10) 지명 - 산, 하천, 호수 등 자연 형성 지형이나 교량,

터널, 교차로 등 지물/지역에 부여된 이름

-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 작업 기록

9) 측량기록

11) 지도

등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 가) <u>수치지형도</u>

-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, 편집, 입출력할

-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 위치, 지형, 지명

- 수 있게 제작 - 항공기/인공위성 영상정보를 이용한
- <u>정사영상지도</u> 등
- 나) <u>수치주제도</u>
-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<u>특정 주제</u>에 관해 제작
- 지하시설물도, 토지이용현황도
- 토지적성도, 국토이용계획도
- 도시계획도, 도로망도, 수계도
- 하천현황도, 지하수맥도, 행정구역도
- 산림이용기본도, 임상도, 지질도
- 토양도, 식생도, 생태·자연도

- 자연공원현황도, 토지피복지도 - 관광지도

- 상기와 유사한, 관련 법령상 정보유통과

활용이나 공공목적상 정확도 확보가 필수적인

- 풍수해/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- 재해지도
- \* 10 \* 10 \* 1 ===

장관 고시 수치주제도

### 나. 지적

- 1) **지적소관청**(이하 **소관청**) - 공부를 관리하는 <u>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</u>
- <u>구청장</u>

- · 제주도 행정시장 포함
-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<mark>시</mark>의 시장 <u>제</u>외
- 자치구가 아닌 구의 <mark>구</mark>청장 <u>포함</u>
- 2) 지적공부
-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

-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 표시와

- **정보처리시스템**(이하 **정보시스템**)에 기록/저장된 것 포함
- 가) 대장은 <mark>토/임/공/대</mark>
- <mark>토</mark>지대장, <mark>임</mark>야대장, <mark>공</mark>유지연명부,
- 나) 도면은 <mark>지/임/경</mark>

<mark>대</mark>지권등록부

- <mark>지</mark>적도, <mark>임</mark>야도, <mark>경</mark>계점좌표등록부

- <u>지적도면</u>은 <u>지적도와 임야도</u>
- 3) 연속지적도
- 지적측량않고
- 전산화된 지적도면 파일을 이용해
-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
- 측량에 활용못함
- 4) 부동산종합공부(이하 종합공부)
- 토지/건축물 표시/소유자, 토지 이용/규제, 부동산 가격 등
- 정보관리체계 통해 기록/저장
- 5) 토지 표시(<mark>소지지/면경좌</mark>)

- 공부에 토지 <mark>소</mark>재, <mark>지</mark>번, <mark>지</mark>목, <mark>면</mark>적, <mark>경</mark>계, <mark>좌</mark>표 등록 6) 필지

- 대통령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 등록단위

7) 지번 - 필지에 부여

8) **지번부여지역**(이하 **지번지역**)

- 공부에 등록한 번호

-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

- 동/리나 이에 준하는 지역

-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 구분해 공부에 등록 10) 경계점 - 필지를 구회하는 서이 국고전

9) 지목

-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- 지적<mark>도</mark>/임야도에 <mark>도</mark>해, 경계점<mark>좌표</mark>등록부에 <mark>좌표</mark> 형태로 등록하는 점
- 1) 경계 -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공부에 등록한 <mark>선</mark>
- 2) 면적 -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

- 3) 토지의 이동
-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, 말소
- 4) 신규등록
- 새로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공부에 등록
- 5) 등록전환
- <mark>임야</mark>대장/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<mark>토</mark>지대장/<mark>지</mark>적도에 옮겨 등록
- 6) 분할
-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